대백궁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07.11(목)이며,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에 있어 판단기준일이 됩니다.(거주지역 제한 없음)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금결원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иm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5	통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LTICH	관	신청문의	
단지명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태백궁전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46	1600-1004
네ㅋㅎ건	대 성공선구기국시시시	페이토 2층	1000-1004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태백궁전	강원도 태백시 문예1길 33	(황지동 49-91)	2개동 141호	'09.04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주 세대당 계약면적(m²)		ᆲ서	77 71	미기즈이	모집할				
단지명	택 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구조/난방	건설 호수	공가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예비자수 (56)
태백궁전	39	39.72	6.7200	0.0000	46.4400	계단식/개별	141	3	4	56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주		임대조	조건		저화가능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단지명	택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보증금	월임대료
	형	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원)	한도액(원)	(원)	(원)
태백궁전	39	8,813,000	1,700,000	7,113,000	123,510	-	8,813,000	123,510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최초입주세대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19.9.1일부터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이율 3%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신청일(서류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u>충족하는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u>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	: <mark>권등</mark> *을 소유하고	 1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H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역	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 신청자의 직기	P자의 직계존속 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	외국인 배우자	거소신고)을 한 /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거소신고)을 한 시 신청자 또는 분 등본에 기재되어 외국인 등록증 상약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사람으로서, 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있거나 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택신청이 불가능하나(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 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 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		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일 • 예비신혼부부	의 경우 무주택세다 실한 세대별 주민등	배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 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 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	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781,27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	4인가구	(4,315,641)원이하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5인가구	(4,689,906)원이하				
		6인가구	(5,144,224)원이하	* 7인가구(5,598,542원), 8인가구(6,052,860원)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	선원이 보유하고 있는	는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신청일(서류접수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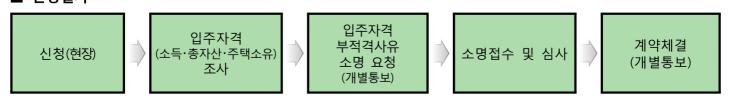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금융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기타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동호를 지정하시어 계약체결 합니다.

6. 모집일정

■ 모집일정

단지명	신청접수	장소(신청접수 및 계약)	계 약 안 내
태백궁전	2019.07.11(목) ~ 모집예비자수 충원시까지 (10:00~16:00)	태백궁전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서류접수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3개월이상 소요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 통보)

※ 신청시 주의사항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모바일 청약 불가
- 1세대당 1개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7. 신청방법

■ 신청방법(현장접수만 가능)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요건,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 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신청자	1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작성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LH 지정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센터	1통
혼인관계서류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주민센터 ・공사양식	1통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주민센터	1통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 ~ 신청일(서류접수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1)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 (2) 본인(신청자) 도장 (3)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9.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4%)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소득초과자의			
	10%이하	최초 <u>갱신 계약시</u> 100%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10%			
	10%이야 10%시아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140%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140% 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에는 갱신시 1회 퇴거유예 혹 수 있습니다.(동일단지 예비입	확인서 와 전용 40㎡이하 예비입국 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독자 신청서를 제출 하고 계약을 체결할 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네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격을 갖춘 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은 계약자(세대구성원 야 합니다.	전원 포함)는 입주자 신청일로부	나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			
신청자격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방법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	l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l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난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선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계약안내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를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L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6 7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시		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역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 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 단지내 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이용등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 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 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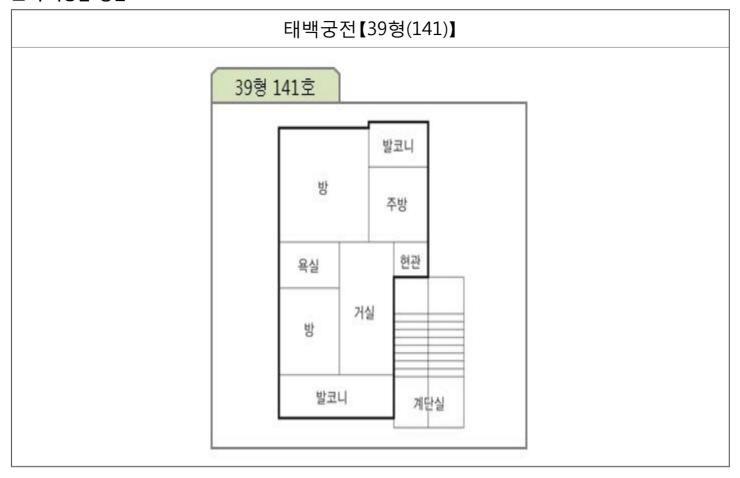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총자산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붙임3] 주택단지 안내사항

■ 주택형별 평면



[붙임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 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	개인정보 내역
1 4	동의	711202 117
기본	V	- 주민등록사항(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라. <u>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u>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 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u>주택소유여부 검색</u>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u>주민등록반호(외국인</u> 등록반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u> 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u>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u>임대료 결제(카드),</u>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유편비스를 통한 암服고, 자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 다. <u>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u> [<u>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u>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u>본인의 고유식별정보</u>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u>본인의 민감정보(장</u> 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교통의합니다. 교통의하지 않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u>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u>하기 위
- // [선택] 본인은 입수사보십 알림 등 공공수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u>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u>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 라. <u>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재 6</u> 개월 [입주대상재 5년 [계약재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아메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_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예시> ※ 점선안에 글자나 숫자가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 ※ 가족란은 동일인이 전부 기재하지 말고, 세대원 각자가 작성 요망 ^{법 시형규칙 [법지 제4호서식] <개절 2017 8. 20.>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협정보) 제공 동의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외국인등특번호)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70717271747 -점선 안에 정자로 길 신청자 XXXXXXXX 자핔기재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XXX-XXX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금육정보 등의 제공 금호장도 등 시설을 돌의자에게 금요정보 등의 신청자와의 돌의자 주민등특번호 계약자 및 등본 내 기 제공을 돌의함나 등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관 계 설 명 (외국인등록비호) (서열 또는 인) 재된 모든 세대구성원 8 | 0 | 1 | 2 | 1 | 4 | -각자가 자필 기재 후 본 인 홍 길 동 홍길동 홍 길 동 1 | X | X | X | X | X | X 서명(대리서명불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8 2 0 4 3 0 -배우자 김 하 니 김 하 니 김하 니 2 | X | X | X | X | X | X 보호자가 서명 9 1 0 8 0 0 9 자 홍세미 $\bar{z} | \bar{x} | \bar{x} | \bar{x} | \bar{x} | \bar{x}$ 홍세미 추가 세대원 기재가 [9 | 2 | 1 | 1 | 1 | 1 필요 할 경우 동의서 자 홍 정 민 1 | X | X | X | X | X | X | X | 를 1장 추가하여 작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 비속의 금융정보통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통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입력 오류시 새 양식에 작성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볼펜이 번지지 않도록 작성 요망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공란이 없도록 기재 2 0 1 9 0 1 1 0 EX) 2019. 1. 10 -> X 2019. 01. 10 -> O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향후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기재 및 미제출시 당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정자로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일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과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정자로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
 - 만일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기를 권장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붙임6]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코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	실 확인 내용	2-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이키ㅂㅈㄱ	예 🗆		원	[임차인]	
	임차보증금	아니오 🗆		원	[임차인]	
기타 자산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이미미지기	예 🗆		원	[임대인]	
부채 ·	임대보증금	아니오 🗆		원	[임대인]	
	장기카드	예 🗆		원	[차주]	
	대출 (카드론)	아니오 🗆		원	[차주]	
1 	1 사기 보이오 사기 되시 하이 내용에 대해 서시히 시고하여이면 향후 하이지나 돈은 토해 사기 시고 되시아.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대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

위 임 장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시 작성)

(수임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수임인에게 (<u>단지명/형별 기재</u>)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9년 07월 11일 공고) 신청/접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1 년 월 일

※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인감도장 지참 ※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

(위임인)

성 명	(인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